

영등포구의회
제12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7. 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6월 25일

2 제안이유

-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 구정을 구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행정조직 명칭 변경

- 국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
- 부서 : 총 무 과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 기획홍보과,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과, 세무관리과 → 세 무 과,
도시관리과 → 도시경관과, 환 경 과 → 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 → 가로경관과, 토 목 과 → 도 로 과,
교통지도과 → 주차문화과, 보건지도과 → 건강증진과

○ 교육지원 부서 신설

- 주민생활지원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
 - 행정국 자치행정과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안 제7조제2항제12호)
- 교육지원과에 “과학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를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3호)

○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

-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를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5조제2항제9호)
-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 (안 제8조제2항제13호)

4**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등

- 지방자치법 등 : 별첨
-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399(2006.12.29)
-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운동을 위한 총액인건비제 매뉴얼

나. 예산조치 : 2007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6.14~6.19(5일 간)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5**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 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고 유사기능 업무를 통합 운영,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통합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본청 부서개편은 고객 위주로 10개과를 명칭 변경하여 유사업무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도시관리국 환경과로 이관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통합 운영하며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 업무를 통합 “교육지원과”를 신설함으로 우리 구 본청 기구가 5국1단2담당관24과에서 5국1단2담당관25과로 1개과가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 표준정원제하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책정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사무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지방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특별시 시세의 목적세를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의 신청 및 보조금의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 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지원 조례」를 제정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평

생교육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어 교육의 국제화에 대응하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교육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기획관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 교육지원 직제를 신설하여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고객 위주의 행정조직 명칭 변경, 유사기능 업무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1995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호가 많으며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7. 6

보고자 : 김 완 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

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취약지역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医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총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총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총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 2004.1.29 “유치원”을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 1702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25호,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